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숙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83

발의년월일: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김화숙, 이병도, 이승미, 이광성,

김정환, 오한아, 이상훈, 권영희,

김호평, 김상훈, 김경우, 이호대,

정재웅 의원 (13명)

1. 제안이유

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공적에 비해 예우와 지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함.

나. 특히 그간 시차원에서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에서, 생활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을 유족(선순위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국가유공자 본인에서 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까지 확대함.(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의 "(유족 및 기족제외)"를 "(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의 "제4조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를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제9호 내지 제13호"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의 "제4조제2호 및 제3호"를 "제4조"로 한다.

제7조제3항제4호의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제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혀 했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자(유족 및 가족제외)가 65세 이상 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 | 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 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 4조제2호 및 제3호
- 3. (생략)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조제2호 및 제3호
- ④~⑤ (생략)

개 정 아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①~② (생 략)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①~②(현행과같음)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자(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가 65세 이상 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 | 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 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제 9호 내지 제13호
 -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u>제</u> 4조
 - 3. (현행과 같음)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조
 - ④~⑤ (현행과 같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를 개정함에 따라 제7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중 요건을 갖춘 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비용(월10만원)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중 요건을 갖춘 자 대상 생활보조수당 지급비용 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발생하며,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자의 숫자는 변함 이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물가상승률 미반영
- 다. 추계기간: 5년

라. 방법

- 서울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은 총 38,651명으로(2019.5월 기준) 이중 65세 이상이며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은 1,430명으로 가정
 - 서울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중 차상위 계층 비율이 3.7%이므로 유족 선순위자 1인 의 경우도 같은 비율 적용하여 산출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합계) = 8,580,000천원(연평균 1,716,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세입		_	-	-	-	1	_
	소계(a)	_	_	_	-	ı	-
세출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중 요건을 갖춘 자 대상 생활보조수당 지급비용 (안 제4조제3호)	1,716,000	1,716,000	1,716,000	1,716,000	1,716,000	8,580,000
	소계(b)	1,716,000	1,716,000	1,716,000	1,716,000	1,716,000	8,580,000
□총 비용(b-a)		1,716,000	1,716,000	1,716,000	1,716,000	1,716,000	8,580,00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비용요소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중 요건을 갖춘 자 대상 생활보조수당 지급비용
- 2. 세부추계내역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중 요건을 갖춘 자 대상 생활보조수당 지급비용≒ 8,580,000천원
 - 산출방식
 - = $\sum_{i=1}^{5}$ (연간 국가보훈대상자유족중 선순위자1인중 요건을 갖춘자 대상생활보조수당지급비용비용)i
 -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연간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중 요건을 갖춘 자 대상 생활보조수당 지 급비용
 - = 지급인원 imes 월 지급수당액 imes 12월
 - = 1,430명 × 100천원 × 12월
 - = 1,716,000천원